

제257회 영등포구의회
2024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·출연 기관
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4. 11. 21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·출연 기관

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440호로 2024년 11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단 및 출자·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
나.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(안 제3조)

다. 출자·출연 기관의 범위(안 제4조)

라. 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(안 제5조)

마. 지도·감독(안 제6조)

바.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(안 제7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(대통령령)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 10. 10.~ 10. 30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(대통령령)」(시행. '24.3.5.)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하여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할 것을 안내한바,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“사이버공격·위협” 및 “사이버보안 업무”에 관하여 규정함.
- 안 제3조(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 및 제4조(출자·출연 기관의 범위)에서는 공공기관의 범위와 출자·출연 기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함.
- 안 제5조(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)는 공단 및 출자·출연 기관의 장은 사이버 공격·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,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함을 규정함.
- 안 제7조(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)는 “사이버보안담당관”의 수행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제정안의 상위법령인 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」(시행. '24.3.5.)이 일부 개정되어 제7조제2의2호(공공기관의 범위)¹⁾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임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해야 할 필요성²⁾이 있음.
- 상위법령의 개정 이유는 현행 규정에 복잡하게 명시되어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상의 공공기관과 일치시키기 위함으로,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에 출자·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속하게 되었음.
- 우리 구(區)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지정·고시된 기관은 ▲영등포문화재단 ▲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총 두 곳이고, 영등포구의 공단은 ▲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으로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사이버공격·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여겨짐.
- 참고로, 우리 구(區) 및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통신보안업무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안 업무처리 규칙」에 규정하고 있음.

1) 제7조(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 2의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

2) ① 서울특별시 정부보안과-775(2024.7.9.) 「「사이버안보 업무규정(승)」 개정에 따른 지자체 출자·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 안내」

② 영등포구 기획예산과-9946(2024.7.8.) 「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 조례 제·개정계획 제출 요청」

참 고 자 료

1 사이버안보 업무규정

제7조(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)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24. 3. 5.>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
- 2의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
3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. 다만, 「지방문화원진흥법」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·협회는 제외한다.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·공립 학교
5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

[제목개정 2024. 3. 5.]

제257회 영등포구의회
2024년도 제2차 정례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4. 11. 21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441호로 2024년 11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미래교육재단의 운영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이사 임기 명확화 등 제도를 개선하고, 교육기관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,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, 초·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초·중·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교육기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 이를 통해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, 구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“학교”의 정의를 유아부터 고등교육까지 포함하도록 함(안 제2조제2호)

나. 이사장 임기를 이사 재임 기간으로 명확히 하고,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사 및 감사 후보 추천 절차를 도입함(안 제8조제6항~제7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3) 인권영향평가: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로 인해 인권침해 가능성 있음

- 해당조항: 제5조(사업) 1항 중 “학생”이라는 표현 대신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용어(예: 청소년 또는 시민) 사용을 권장함

- 수용여부: 미반영(추후 반영 예정). 현행 사업이 학교 지원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상이 학생으로 제한됨. 향후 사업 확대 시 해당 조항을 개선할 계획임

라. 입법예고(2024. 10. 10.~10. 30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안건은 “학교”의 정의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추가하여 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, 임원의 임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(정의)에서는 현행 “학교”의 정의(초·중·고·대)에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하여 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함.

- 안 제8조제6항(임원)에서는 이사장 임기와 이사 임기를 일치

시킴을 위하여 이사장의 임기를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규정함.

- 안 제8조제7항(임원)에서는 임원 추천을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개정안은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사업을 시행하는 데 미취학 아동(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미취학 아동) 또한 재단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,
-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교는 상위법(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학교)에서 정하는 것으로 현재 미취학아동은 사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.
- 한편, 영등포구 제245회 2023년 제1차 정례회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」가 안건으로 상정되어 “장학재단”이 “미래교육재단”으로 제명 및 조문이 변경되기 전, 목적사업의 추가(지역인재양성) 등에 관한 사항을 영등포구 장학재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승인¹⁾을 받은 바 있음. 이때 재단 정관 제1조(목적) 정의하고 있는 “학교”의 범위에 속하는 학생(초·중·고·대)이 사업의 수혜 대상으로 되어있기에 미취학아동을 포함하여 사업을

1)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과-5048(2023.3.13.) 「정관변경(명칭, 목적, 사업 등) 허가(영등포구장학재단)」

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.

- 따라서,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을 포함하여 장학사업(독서장학금)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사료되며, 관계 법령 및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의 사업목적 및 재단 설립 목적²⁾과도 부합한다고 여겨짐.
- 참고로, 본 조례안이 가결될 경우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 중 “독서장학금”의 지원대상이 초등학생에서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으로 변경될 예정임.
- 다만, 사업대상 확대로 기인하여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, 지원 규모가 같기에 추후 균형 있는 지원 대상 선발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으로 사료됨.

2) 재단법인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정관

제1조(목적)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생활이 곤란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위한 장학 사업, 지역우수인재 양성에 필요한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지원 사업,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사업 등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다음으로 임원의 임기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, 미래교육재단에는 업무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, 이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20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있음.
- 현재 이사장의 임기³⁾는 조례 제8조제6항(임원)에 따라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, 이사의 임기는 재단법인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정관 제18조에서 조례와 같은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나,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 시작 시점이 다르면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어 구체적으로 “이사장의 임기를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”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, 내실있는 위원회 구성을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근거를 만드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3)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정관 제21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)에 따라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구청장 및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
참 고 자 료

1 영유아교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3. “어린이집”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.

2 유아교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“유치원”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